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2016 정기 총회

일시 : 2016년 04월 26일(화) 오후 7시

장소 : 청년허브 다목적홀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Karl Polanyi Institute Asia

목 차

■ 정기총회 순서	5
■ 창립선언문	6
■ 조직 현황 및 연혁	8
■ 심의 안건	
제1호 의안 2015년 사업보고 및 감사 승인의 건	15
제2호 의안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9
제3호 의안 2016년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37
제4호 의안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41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45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49
■ 부록	
정관	53
조합원·회원 가입신청서	71

정기총회 순서

1부 기념식

- 인사말
- 내빈 및 조합원 소개
- 축사 : 마가렛 멘델 캐나다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부 총회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조직 현황 및 연혁 보고
- 회의록 관련인 선출
 - 의사록 서기 선출
 -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출
- 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2015년 사업보고 및 감사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16년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 폐회 선언

창립선언문

2000년대 세계 경제 위기는 우리가 경제를 생각하는 방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인간이란 개인적 이기심을 앞세우는 존재이며, 모두가 각자의 이윤을 무한정 추구하는 것이 집단의 번영과 행복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지난 몇십 년간 우리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 나아가 생태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상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 왔지만, 우리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만성적인 대량 실업과 장기 침체, 양극화와 불평등이 현실이 되어 버렸으며 다양한 인간적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대안적 원리와 경제 사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장 근본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이다.

우리는 칼 폴라니의 사상에서 이러한 난관을 뚫고 나갈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폴라니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온전한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 세상의 경제 활동은 시장과 수익성이라는 것 외에도, 무수히 다양한 가치와 원리를 통해 조직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경제 이론과 사상의 틀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칼 폴라니의 저작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보급 확산하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지난 몇십 년간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화폐적 이윤만이 아닌 인간적 가치와 동기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인간의 살림살이를 마련해나가는 활동이며, 대안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맹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폴라니의 사상에 입각하여 한국과 아시아의 토양에 맞는 사회적 경제의 모델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다원적 경제 발전 모델’의 구상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국가, 사회, 생태 등 다양한 영역의 특성이 무시되고 시장과 수익성의 원리로 우리의 세상을 획일화시킨 결과, 삶의 다양한 가치가 왜곡 파괴되었고, 경제 발전의 활력과 뿌리까지 잠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과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다른 영역들이 저마다

의 역할을 맡아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상할 것이다.

실천의 위기는 이론의 위기이며, 이론의 위기는 곧 실천의 위기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중적 위기”이며, 따라서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또한 두 지평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는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연대의 이상이 함께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찾아가는 데에 진력할 것이다.

2015년 3월 17일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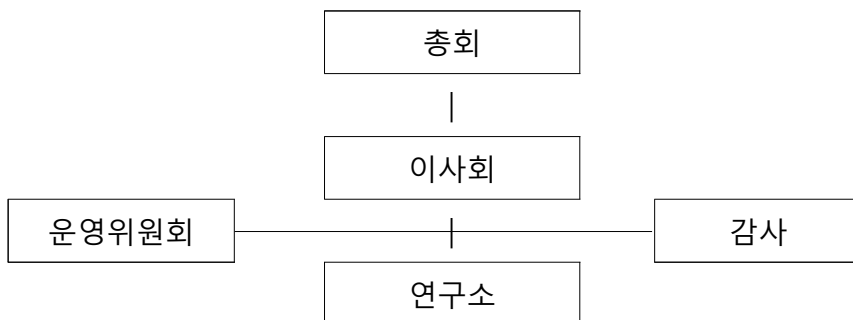
조직 현황 몇 연혁

1. 칼플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 칼 플라니 저작의 연구 증진
- 한국형 사회적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 작업
- 시장·사회적 경제·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경제 성장 모델” 개발

2. 칼플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의 조직 체계

- 조직도



■ 조합원 증감 추이(2015.01~2016.04.20.)

년월	일반	평생	활동가	학생	총인원
2015년 1월	-	6	-	-	6
2015년 2월	13	10	5	-	28
2015년 3월	15	9	10	2	36
2015년 4월	7	4	5	1	17
2015년 5월	4	4	4	1	13
2015년 6월	8	1	8	5	22
2015년 7월	29	2	10	6	47
2015년 8월	5	1	1	1	8
2015년 9월	3	-	-	1	4
2015년 10월	1	1	2	-	4
2015년 11월	5	1	1	-	7
2015년 12월	3	-	2	6	11
2016년 1월	2	3	5	4	14
2016년 2월	3	-	-	-	3
2016년 3월	2	-	-	1	3
2016년 4월	4	-	1	-	5
총인원	104	42	54	28	228

3.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연혁

○ 2013년

- 11.5(화) - 11. 7(목)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서울 유치 원칙적 합의
 - 2013년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에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용 이사장과 캐나다 칼폴라니연구소의 마거릿 멘델 소장 상호 제안
 - 이후 한국과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을 수립하고 연구자, 사회적 경제 분야 종사자, 정책입안자 등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기로 결정

○ 2014년

- 상반기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 사회적 경제 분야 리더 중 1차로 참여 가능한 범위에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 7.22(화)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위원회 1차 회의
- 8.11(월)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 워크숍
 - 설립추진계획안 공유, 협동조합 운영기조 등에 대한 토론
- 10.17(금)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
- 11.6(목) - 11. 7(금) 제13차 칼폴라니국제컨퍼런스(캐나다 몬트리올) 참석
 -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계획 홍보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칼 폴라니 명칭 사용 관련 협약 체결: 카리 폴라니 레빗(칼 폴라니 명칭 사용권자, 캐나다 맥길대 명예교수) - 설립준비위원회
- 11.19(수)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유치 협약 체결
 -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서울 유치 관련 MOU 체결: 서울시 -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위원회
- 12.19(금)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위원회 3차 회의

○ 2015

- 2.24(화)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준비위원회 4차 회의
 - 조합 명칭 검토: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 정관(안) 검토
 - 발기인회의와 창립총회 개최 결정 및 일정 확정
- 3.10(화)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발기인회의
 - 정관(안), 임원 선출(안), 2015년 사업계획서(안), 2015년 수입지출예산서(안) 등 검토
- 3.17(화) 2015년 제1차 이사회
- 3.17(화)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창립총회
 -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승인 등 조합원 창립 동의
- 4.24(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개소식 및 창립기념행사
 - 구례_KPIA·아이쿱 공동포럼 “칼 폴라니와 21세기 경제” / 2015년 4월 17일(금)
 - 대구_KPIA·커뮤니티와경제 공동포럼 “칼 폴라니, 사회적 경제를 묻다” / 2015년 4월 20일(월)
 - 서울_KPIA 개소식 및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엄 “칼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의 미래” / 2015년 4월 24일(금)
- 7.9(목) - 8.20(목) 제1기 폴라니학교
 - 1강. 폴라니의 생애와 사상 / 2015년 7월 9일(목)
 - 2강. 폴라니 사상과 사회적경제 / 2015년 7월 16일(목)
 - 3강. 현재의 경제위기와 불평등 / 2015년 7월 23일(목)
 - 4강.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 2015년 8월 6일(목)
 - 5강. “살림살이의 경제학”과 현재의 경제학 / 2015년 8월 13일

- 6강. 폴라니와 다윈적 발전 / 2015년 8월 20일(목)
- 7.22(수) 2051년 제2차 이사회
- 7.25(토) 포스트 케인지언 세미나 시작
 - 포스트 케인지언 거시경제 모델 작성
 - “한국의 불평등과 소득주도 성장전략” 작성
- 8.22(토) 협동조합 기업이론 세미나 시작
 - 협동조합 경영 및 기업이론 관련 논문 세미나
- 11.23(월) 제1회 월례 교육강좌
 - 한국경제, 위기인가?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2016

- 1.6(수) - 2. 3(수) 제2기 폴라니 학교
 - 1강. 협동의 경제학, 그 이후 / 2016년 1월 6일(후)
 - 2강. 위기의 한국경제 / 2016년 1월 13일(수)
 - 3강.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 / 2016년 1월 20일(수)
 - 4강. 자기조정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 2016년 1월 27일(수)
 - 5강. 살림살이의 경제학 / 2016년 2월 3일(수)
- 1.27(수) 2016년 제1차 이사회
- 1.30(토)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 1쇄 출간
 - 지은이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옮긴이 박정훈, 감수 정태인
 - 공동발행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 2.20(토) 경제 사상사 세미나 시작
 - E.K 헌트 ‘경제 사상사’ 강독
- 3.16(수) 제2회 월례 교육강좌
 - 위기의 한반도 / 정육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 3.25(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 2쇄 출간

심 의 안 건

제 1 호 의 안

2015년 사업보고

및

감사 승인의 건

<의결 주문>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2015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15년 사업보고

[연구사업]

1. 서울경제의 소득주도형 성장전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발주처: 서울연구원
- 연구자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연구기간 : 2015.1 ~ 2015.4
- 연구비 : 1,000만원
- 연구범위
 - 포스트케인지언 소득주도성장이론과 서울의 불평등 현황, 소득주도성장 정책

2. 사회적 경제 사상 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발주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연구기간: 2015년 5월 ~ 2015년 11월
- 연구책임자: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 연구예산: 4,540만원
- 연구범위
 - 사회적경제 이론 및 사상 연구
 - ↳ 사회적 경제 관련된 핵심이론 및 사상 연구
 - ↳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출간 된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정리
 -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와 실제 경제학
 - ↳ 이윤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동기로 조직 제도화되며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설명

3. 공적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 화성 따뜻한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화사넷”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 발주처: 화성시청
- 연구기간: 2015년 9월 ~ 2016년 1월
- 연구책임자: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연구예산: 1,950만원
- 연구범위
 - 공적 상조서비스 주식회사 설립 및 사회적경제화

- ↳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
- ↳ 상조주식회사의 사회적기업 전환 검토
- 장례용품 시장가격 조사 및 저가 보급 방안
 - ↳ 기존 상조용품 현황 파악
 - ↳ 장례용품 저가 보급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생산 방안
- 기존 장례식장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상생전략 방안
 - ↳ 기존 장례식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상생화 방안

[교육사업]

1. 제1기 플라니학교

- 주제: 플라니와 사회적 경제
- 일자: 2015년 7월 9일 ~ 8월 20일, 총 6강
- 참가: 72명
- 세부내용
 - 1강. 플라니의 생애와 사상 - 홍기빈, 7월 9일
 - 2강. 플라니 사상과 사회적경제 - 홍기빈, 7월 16일
 - 3강. 현재의 경제위기와 불평등 - 정태인, 7월 23일
 - 4강.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 정태인, 8월 6일
 - 5강. “살림살이의 경제학”과 현재의 경제학 - 홍기빈, 8월 13일
 - 6강. 플라니와 다원적 발전 - 정태인, 8월 20일

2. 월례 교육강좌

- 일자: 11월 23일, 1회
- 주제: 한국경제, 위기인가?
- 참가: 51명
- 강사: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3. 세미나: 포스트 케인지언

- 시기: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격주 진행
- 참가: 정태인, 유철규, 조복현 등 경제 전문가 7명
- 내용:

- 포스트 케인지언 거시경제모델 작성
- “한국의 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전략” 발간 예정

4. 세미나: 협동조합기업이론

- 시기: 2015년 8월부터 격주 진행
- 참가: 조합원 13명
- 내용: 협동조합 경영 및 기업이론 관련 논문 세미나

[출판사업]

- 설립 등기 후 출판업 등록
- 아이템 보유 현황(2015.12.31. 기준)

아이템명	지은이	옮긴이	진행현황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 Pensamientos(Reflection)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티아리에타	박정훈	20160130 발간
로버트 오언 The Life of Robert Owen	G. D. H. Cole	홍기빈	번역 중
대전환에서 대금융화로 From the Great Transformation to the Great Financialization	Kari Polanyi Levitt	정태인	번역 중

[창립기념 주간행사]

1. 칼폴라니와 21세기 경제

- 일자: 2015년 4월 17일 ~ 18일
- 장소: 전남 구례 아이쿱자연드림파크
- 참석: 200여명
- 내용: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창립 기념 & 구례자연드림파크 개장 1주년 기념 공동포럼
 -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와 홍기빈 연구위원장의 대담
 - 마가렛 멘델 교수의 영상 메시지
 - 네트워킹 파티

2. 칼폴라니, 사회적 경제를 묻다

- 일자: 2015년 4월 20일
- 장소: 대구광역시 꿈꾸는 씨어터
- 참석: 100여명
- 내용: 정태인, 홍기빈, 이정옥 유길의 박성익 대담

3.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개소식 & 심포지엄

- 일자: 2015년 4월 24일
- 후원: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내용:
 - 개소식
 - 케리 폴라니 레빗 교수 기자회견
 - 국제 심포지엄
 - ↳ 기조연설, 폴라니의 사상과 위기의 극복, 케리 폴라니 레빗
 - ↳ 연설1, 호세 마리아와 몬드라곤 협동조합, 까를로스 가르시아 데 안도인
 - ↳ 연설2, 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임정엽 전 완주군수

2015년 감사보고

제 1 기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 무 상 태 표

제 1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회사명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당기)		제0(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31,508,727		0
(1) 당 좌 자 산		27,918,533		0
보 통 예 금		27,918,533		0
(2) 제 고 자 산		3,590,194		0
재 공 품		3,590,194		0
II. 비 유 동 자 산		14,620,909		0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14,620,909		0
비 품		14,620,909		0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46,129,636		0
부 채				
I. 유 동 부 채		51,807,459		0
예 수 금		99,000		0
부 가 세 예 수 금		3,248,459		0
선 수 금		48,460,000		0
II.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51,807,459		0
자 본				
I. 자 본 금		5,100,000		0
자 본 자 금		5,100,000		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V. 결 산 금		10,777,823		0
미 처 리 결 산 금		10,777,823		0
(당 기 순 손 실)				
당기 : 10,777,823 원				
전기 : 0 원				
자 본 총 계		-5,677,823		0
부 채 및 자본 총 계		46,129,636		0

손익계산서

제 1(당)기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회사명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1(당)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53,253,891		0
교육사업수입	14,806,000		0	
연구사업수입	38,357,891		0	
II. 매출원가		49,830,202		0
연구사업매출원가		44,334,764		0
교육사업매출원가		5,495,438		0
III. 매출총이익		3,423,689		0
IV. 판매비와관리비		140,772,098		0
직원급여	94,800,000		0	
잡급여	420,000		0	
복리후생비	3,867,936		0	
여비교통비	6,831,233		0	
통신비	605,001		0	
세금과공과금	1,448,090		0	
지급인차료	9,715,360		0	
보험료	2,926,170		0	
도서인쇄비	2,179,745		0	
회의비	319,730		0	
소모품비	4,121,636		0	
지급수수료	4,323,719		0	
광고선전비	6,196,248		0	
건물관리비	3,017,230		0	
V. 영업손실		137,348,409		0
VI. 영업외수익		126,684,365		0
이자수익	11,478		0	
조합비	57,140,000		0	
회비수입	9,170,000		0	
후원금	32,870,337		0	
출판후원금	7,000,000		0	
정부지원금	19,669,890		0	
잡이익	822,660		0	
VII. 영업외비용		113,779		0
잡손실	113,779		0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10,777,823		0
IX. 법인세		0		0
X. 당기순손실		10,777,823		0

연구사업원가명세서

제 1기 2015년 0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합동조합

(단위: 원)

과 목	제 1 (당기)	
	금 액	금 액
I.공 사 원 재 료 비	0	0
II.노 무 비	0	0
III.외 주 비	0	0
IV.경 비	44,334,764	0
복 리 추 생 비	24,728	0
여 비 교 통 비	18,182	0
통 신 비	53,190	0
사 무 용 품 비	25,364	0
소 모 품 비	21,800	0
지 급 수 수 료	311,525	0
외 주 용 역 비	5,609,000	0
학 습 행 사 비	12,471,557	0
연 구 비	25,799,418	0
V.당 기 총 공 사 비 용	44,334,764	0
VI.공 사 손 실 총 당전입	0	0
VII.공 사 손 실 총 당환입	0	0
VIII.기 초 미 완 성 공사액	0	0
IX.타 계 정 에 서 대체액	0	0
X.합 계	44,334,764	0
X I.기 말 미 완 성 공사액	0	0
X II.타 계 정 으 로 대체액	0	0
X III.당 기 공 사 원 가	44,334,764	0

교육사업원가명세서

제 1기 2015년 0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 1 (답) 기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I.분양공사원재료비		0		0
II.노무비		0		0
III.외주비		0		0
IV.경비		5,495,438		0
복리후생비	430,474		0	
여비교통비	1,664,964		0	
통신비	105,790		0	
지급임차료	1,572,230		0	
도서인쇄비	1,026,363		0	
소모품비	12,224		0	
지급수수료	37,000		0	
외주가공비	646,393		0	
V.당기총공사비용		5,495,438		0
VI.공사손실충당전입		0		0
VII.공사손실충당환입		0		0
VIII.기초미완성공사액		0		0
IX.타계정에서 대체액		0		0
X.합계		5,495,438		0
XI.기말미완성공사액		0		0
XII.타계정으로 대체액		0		0
XIII.당기공사원가		5,495,438		0

제 조 원 가 명 세 서

제 1기 2015년 0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금	액	금	액
I. 원 제 료 비		0		0
II. 노 무 비		0		0
III. 경 비		3,590,194		0
통 신 비	5,000		0	
도 서 인 쇄 비	25,454		0	
지 급 수 수 료	1,896,500		0	
출 판 번 역 료	1,663,240		0	
IV. 당 기 총 제 조 비 용		3,590,194		0
V. 기 초 재 공 품 재 고액		0		0
VI. 합 계		3,590,194		0
VII. 기 말 재 공 품 재 고액		3,590,194		0
VIII. 타 계 정 으 로 대 체액		0		0
IX. 당 기 제 품 제 조 원가		0		0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회계감사 의견서

1. 감사대상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의 2015년 회계
결산보고서
2. 감사내용 : 재무상대표상의 재공품 및 선수금, 출자금
관련하여 적정성 검토
3. 감사의견 : 기말 현재 미완성 제품이 있는 관계로 재공품
처리한 것은 적정하며, 출자금을 선수한 것을
차기에 출자금으로 대체처리 계획(등기변경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2016년 4월 22일

감사인 : 육 성 주



제 2 호 의 안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의결 주문>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2016년 사업계획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16년 사업계획

[연구사업]

1. 서울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 사례조사 연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 경제 정책 실태조사
- 서울시 사회복지부문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도출
- 발주처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 연구기간 : 2015. 12 ~ 2016. 5
- 연구책임자 : 김연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예산 : 2,000만원

2.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방안 연구

-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 약사
- 서울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개방형 설문조사
- 사회적 경제 서울형 PPP 모델의 단계별 전략 제시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화 촉진을 위한 과제 도출
- 연구책임자 : 김연아, 공동연구자 : 정태인, 사회복지 전문가
- 발주처 : 서울연구원
- 연구기간 : 2016. 5.1. - 2016.11.30.
- 연구예산: 2,000만원

3. 사회적 경제 국제비교연구

- 사회적 경제 국제 비교: 몬드라곤, 퀘벡, 에밀리아 로마냐, 중남미 등
- 사회적 경제 서울모델 발표
- 연구책임자 : 칼폴라니연구네트워크(캐나다, 프랑스, 한국), 몬드라곤대학교, 볼로냐대학교
- 연구기간 : 2016.1 - 2017. 12 (중간발표는 2016. 9)
- 발표 : 칼폴라니 국제학회
- 연구예산: 3,000만원

4.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 국내 사회적 혁신 관련 논의 및 사업 요약
-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 규명
-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의 결합 방안 모색
- 연구 책임자: 홍기빈, 공동연구자: 김병권 외 사회혁신 센터 리서치 분과
- 발표: 2016년 여름(2016년 4월 현재 연구 진행 중)
- 연구예산: 1,000만원

[교육사업]

1. 플라니학교

1) 제2기 플라니학교

- 강좌 일정 : 1월 6일, 13일, 20일, 27일, 2월 3일 총 5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참가 비용 : 조합원 5만원, 비조합원 25만원
- 수강 인원 : 63명 (비조합원 11명)
- 강좌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별관>교육장 8층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 강좌 내용
 - 1강. 협동의 경제학 그 이후 - 정태인, 1월 6일
 - 2강. 위기의 한국경제 - 정태인, 1월 13일
 - 3강.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 - 김연아, 1월 20일
 - 4강. 자기조정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 홍기빈, 1월 27일
 - 5강. 살림살이의 경제학 - 홍기빈, 2월 3일

2) 제3기 플라니학교

- 강좌 일정 : 2016년 7, 8월 중
- 강좌 장소 : 서울 내, 지역단위의 요청이 있을 시 지역에서 진행 가능
- 강좌 내용 : 칼 플라니 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이론

2. 월례 교육강좌

- 시기: 매월 1회 진행 (총회, 플라니학교가 있는 월은 제외)
- 주제: 월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진행
- 강사: 연구소 자체 강사를 기본으로 하되, 주제의 다양성을 위해 외부 강사를 섭외

3. 세미나: 협동조합기업이론 세미나 2기

- 시기: 2016년 2월부터 매월 진행
- 참가: 협동조합기업이론 세미나 1기 조합원 10명
- 내용: 협동조합 경영 및 기업이론 관련 논문 비평 및 정리

4. 세미나: 경제 사상사 세미나

- 시기: 2016년 3월부터 매월 진행
- 참가: 조합원 8명, 비조합원 1명
- 내용: E.K 헌트 “경제 사상사” 강독 및 토론

[출판사업]

1. 발간 종수: 4종 4권(내서 1권, 외서 3권)

○ 도서명: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

- 저자: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 역자: 박정훈, 감수: 정태인
- 출간일: 2016년 1월 30일
- * 해피브릿지협동조합연구소 공동출판(제작비 일부 지원)
- * 제작부수: 3,000부(초판 2,000부)
- * 판매부수: 1,953부(2016년 3월말 현재)

○ 원제: The life of Robert Owen

- 저자: G. D. H Cole
- 역자: 홍기빈
- 출간예정일: 2016년 6월
-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료 지원

○ 원제: From the Great Transformation to the Great Financialization

- 저자: Kari Polanyi Levitt
- 역자: 정태인
- 출간예정일: 2016년 8월

○ **가제: 사회혁신으로서의 협동조합: 로버트 오언과 로치데일 선구자들**

- 저자: 홍기빈
- 출간예정일: 2017년 상반기
-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원고료 지원

[조직사업]

1. 교육을 통한 조합원 확대

1) 플라니 학교

- 2015년 가장 높은 가입 요인이었으며, 기존 조합원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 사업.
- 다양한 커리큘럼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강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기존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조합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2) 활동가 교육 개발

- 전체 조합원과 회원 중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가가 약 25%를 차지, 이들의 사회적 경제 이론과 플라니 사상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 내용: 서울 모델, 사회적 경제의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에 대한 심층 교육

3) 온라인 교육

- 현재 교육은 서울·경기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조합원 유입 요인이 매우 낮음
- 내용: ‘거대한 전환’ 팟 캐스트 교육, 2월 중 시작 예정

2. 지역 사업을 통한 조합원 확대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칼 플라니 연구소 홍보
- 지역 순회강연 기획
 - 시기: 3, 4, 5월 중
 - 지역: 전국 5개 도시 이상(광주, 전주, 부산, 대구 등)
 - 내용: 출판 홍보(‘호세’, ‘오언’), 칼 플라니 사상, 평등의 정치경제학 등

3. 일상 사업을 통한 조합원 확대

1) 수도권 조합원 확대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오프라인 모임 개설
- 내용: 연령, 취미, 학습 등의 다양한 모임 시도 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4. 운영위원 확대 및 활동 계획 수립

- 현재 연구소 상근 인력으로는 일상적 조합원 확대 사업에 한계가 있음
- 현 운영위원의 구성으로는 실질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 재구성 및 조합원 관리 및 확대 사업 수립

제 3 호 의 안

201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주문>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2016년 수입 · 지출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1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¹⁾		27,918,551	경상비	인건비	125,000,000	
사업수입	연구사업	80,000,000		임대료	10,169,890	
	교육사업	15,000,000		운영비 ²⁾	50,000,000	
	출판사업	80,000,000		소계	185,169,890	
	소계	175,000,000		사업비	연구사업	70,000,000
사업 외 수입	출판기금	10,000,000	교육사업		12,000,000	
	연구기금	10,000,000	출판사업		50,000,000	
	학술행사지원	5,000,000	학술행사		8,000,000	
	소계	25,000,000	국내네트워크사업		5,000,000	
출자금		3,000,000			국제교류사업	5,000,000
조합비		75,000,000			홍보사업	5,000,000
차입금		-			소계	155,000,000
지원금(임대료)		10,169,890	사업외지출		1,000,000	
후원금 ³⁾		60,000,000	출자금반환		1,000,000	
기타수입		1,000,000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9,400,000	
			차기이월금		25,518,551	
합계		377,088,441	합계		377,088,441	

1) 전기 이월금은 12월 31일 기준 통장 잔액
 2) 4대보험금 포함
 3) 연구사업의 연구비 포함

제 4 호 의 안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결 주문>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15년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요청 건

(단위: 원)

조합원 이름	출자구좌수	출자금액	가입일	탈퇴일
오교진	2	100,000	2015.02.20.	2015.07.01.
박성혜	1	50,000	2015.05.22.	2015.02.26
정기석	2	100,000	2015.04.30.	2015.05.22.
허선례	2	100,000	2015.04.17.	2015.05.22

제 5 호 의 안

임원 선출의 건

<의결 주문>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추천한 다음의 후보자를
본 협동조합의 임원(이사)으로 선출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임원 후보자의 성명 : 김대훈

제 6 호 의 안

기타 안건

부 록

칼 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칼폴라니사회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자주·자치적인 활동으로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을 심화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한국적 사회적 경제 모델의 이론적 실천적 수립에 기여하며, 국가와 시장과 사회적 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할 “다원적 경제 발전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칼폴라니 경제 사상의 이해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저작, 번역, 교육 및 제반 사업, 둘째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조사와 교육, 현장 활동, 셋째 경제와 사회, 생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구상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펼쳐나가는 조직으로서 이러한 목적과 함께 하는 개인과 단체,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활동을 펼쳐 나간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국내·외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파산한 경우
-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조합원 : 2구좌 이상의 출자금과 월 조합비 또는 평생조합비를 납부
2. 학생조합원 : 1구좌 이상의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납부
3. 활동가조합원 : 1구좌 이상의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납부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월 조합비 등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

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7. 회원에 관한 규정
 -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43조 제1항 이사회 의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9. 당선인의 확정
 -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등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 및 교육사업
2. 출판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

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 조합원 □ 회원 가입 신청서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조합운영(총회 등)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비영리단체의 회원과 지위가 같으며,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은 조합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출자금 변동등기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주 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동기 (추천인)		하시는 일	선택기재사항

CMS 출금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신청인과의 관계		
예금주 생년월일	가입자와 다를 경우에만 기재		
유형 선택		출자금(1좌 5만원) 조합원만 기재	월 조합비 또는 회비
	<input type="checkbox"/> 일반	좌 (2좌 이상)	원 (2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평생	좌 (2좌 이상)	원 (조합원 90만원 이상) (일시불) 원 (회원 100만원 이상) (일시불)
	<input type="checkbox"/> 학생	좌 (2좌 이상)	원 (1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활동가	좌 (1좌 이상)	원 (1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단체	좌 (1좌 이상)	원 (10만원 이상)
출 금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출자금은 조합비 첫 출금일에 자동이체로 함께 출금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 조합이 개인정보를 수집 ·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 안 함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귀중

출자금/조합비/회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502-727486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문자서비스(사진)을 활용해 보내주시시오.
 ■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 전화: 02-383-3457 팩스: 02-383-3458 휴대폰: 010-4657-5357 이메일: kpolanyasia@gmail.com